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68 발의연월일: 2023. 8. 10.

발 의 자:도종환·김철민·서동용

이정문 • 민형배 • 기동민

박 정・안민석・문정복

강민정 • 조승래 • 권칠승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의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관여하거나 학생이 반발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교육활동 침해, 민·형사상 소송으로 부담이 큰 상황임.

현재 각 교육청은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을 민간보험사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교원 보호 사업은 지 역별로 달리 운영되기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민간보험사보다는 학교안전공제회 와 같이 공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해당 공제사업을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 교원 보호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안전공

제회에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4(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교원 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비용의 지원. 다만,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제공
 - 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학교안전공제회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한다.
 -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4조의4(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공제
	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
	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포함한다.</u>
	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
	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비
	용의 지원. 다만,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
	<u>생한 상해·상담·심리치</u>
	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
	비스 제공
	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
	<u>적 분쟁에 대한 민·형사</u>

상 소송비용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에 교원보 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한다.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 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